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31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윤준병 · 김의겸 · 朴芝源
이춘석 · 송옥주 · 이재관
박용갑 · 박홍배 · 전용기
최혁진 · 권칠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행위 또는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나 현저한 남용으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장기간의 세월이 흘러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봉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지난 2026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 조작의

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1헌바145 등).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질서 파괴행위, 중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등의 피해를 입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은 현행법상 청구권자인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가. 1945년 8월 14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나.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24條(再審請求權者)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再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u>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死亡하거나 心神障礙가 있는 境遇에는 그 配偶者, 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u>	第424條(再審請求權者)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u> <u>가. 1945년 8월 14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 · 살인 · 상해 · 실종 · 고문 · 구금 사건</u> <u>나.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u>

	<u>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u> <u>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u> <u>생한 사망·상해·실종·</u> <u>고문·구금 사건, 그 밖에</u> <u>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u> <u>작의혹사건</u>
--	---